

(국민의힘, 용산2)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행정자치위원회 최윤희 의원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용산2 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최윤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평생교육법」 제28조제3항은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에게
학습자 등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현재까지 이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아, 관
련 법률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전국 17개 광
역자치단체 중 서울시만이 유일하게 해당 법률 규정을 조례에 반
영하지 않아, 법령 이행의 공백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
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곧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시급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평생교육에 참여하면서,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이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 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학습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평생교육법」 제28조제3항을 반영하여, 평생교육기관의 보험 가입 또는 공제사업 가입 기준을 명시함(1인당 1억 원 이상, 1사고당 10억 원 이상) (안 제5조의4제1항)

둘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및 운영자가 사고 발생 시 이용자의 생명·신체상 손해에 대해 신속한 보상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안 제5조의4제2항)

이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되면, 서울시 관내 평생교육기관이 법령에 부합하는 수준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되어 학습자들의 안전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체계를 갖추게 됨으로써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